실업인정 신청서와 **근로계약서(혹은 재직증명서)**를 팩스번호 **0508-8230-0573** 으로 전송하시면
취업일 전일까지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. .(창업시 사업자등록증) - 반드시 **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송부**하시기 바랍니다.

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[별지 제82호서식] <개정 2019. 7. 16.>

실업인정(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)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앞쪽, 뒤쪽 모두 작성하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: 5일

신청인 (수급자격자)	①성명	②주민등록번호
	③주소	(전화번호: (휴대전화번호:

④지정된 출석일(실업인정일)	⑤실업인정대상기간

⑥지급계좌	신규신청[ ] 변 경[ ]	은행명: 계좌번호: 예금주: * 지급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"압류방지 전용통장" 발급받아 기재
⑦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사실 등 확인	근로사실 및 소득발생	[ ] 없음 [ ] 있음 (근로일: 소득(예정)액:)
	사업자등록 (자영업개시)	[ ] 없음 [ ] 있음 (등록일(시작일): 사업내용:)
	산재휴업급여	[ ] 없음 [ ] 있음 (재해일:)
⑧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	구직활동	일자 / 업체명 / 전화번호 / 직종 / 구직방법 / 구직활동 결과
	자영업 준비활동	
	취업(예정)내역	[ ]취직 [취직(예정)일: 회사명: 전화번호:] [ ]자영업 [시작(예정)일: 사업내용:]
취업일 이전을 물어보는것		
⑨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하여야 할 활동	[ ] 구직활동( ) [ ] 자영업 준비활동 [ ] 고용센터 집체교육 [ ] 직업훈련 수강 [ ] 직업지도 참여(취업특강 등) [ ] 사회봉사활동 참여 [ ] 집단상담 프로그램( ) [ ] 기타( )	
⑩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 *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	[ ]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[ ] 전자우편(이메일:)	

「 고용보험법 」 제44조제2항·제3항 및 제69조의9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·제66조 및 제93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및 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실업인정을 신청하며,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 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 귀하

첨부서류	1. 수급자격증 1부 2. (상해)진단서,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, 면접확인서, 구직활동 내역서 등 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」 제90조에 따른 증 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의 각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 3.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9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강증명서(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
※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.

실업인정 유형	[ ] 실업인정일 변경 [ ] 증명서에 따른 실업인정 [ ] 잠정실업인정 [ ]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실업인정 [ ] 상병급여 청구와 병행 [ ] 유족의 청구에 따른 실업인정							
지급 사항	처리	실업인정일수		구직급여 산출명세		지급액		
		미지급사유						
접 수	접수연월일	접수번호	결재	담당	팀장	과장	청장지청장	결재연월일
	. . .							. . .

210mm×297mm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